

별지1.

## 천안 부성지구 한라비발디 특별공급 관련 모집공고(안)

- 본 안내문은 '천안 부성지구 한라비발디'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특별공급 신청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자료로 인·허가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청약홈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개정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 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선정 (동·호수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모집개요(안)

주택구분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 지분	총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084.9865A	84A	84.9865	27.0955	112.0820	63.4176	175.4995	49.6288	311	30	25	45	7	27	126	185	18
	084.9879B	84B	84.9879	27.0970	112.0849	63.4186	175.5035	49.6297	185	20	25	65	7	28	152	33	10
	084.9847C	84C	84.9847	27.4666	112.4513	63.4162	175.8676	49.6778	158	15	15	20	5	10	66	92	9
	합 계								654	65	65	130	19	65	344	310	37

구 분	대 상 (주택 소유 구분)	1순위 청약 제한 대상	가점제 청약 제한 대상
1순위 청약 자격 대상자	무주택자, 1주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주가 아닌 자</li> <li>·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li> <li>· 2주택 (분양권 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li> <li>· 과거 당첨으로 재당첨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 청약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li> </ul>
가점제 대상자	무주택자		
추첨제 대상자	1주택자		
1순위 청약 제한 대상자	2주택자		

당첨된 주택의 구분	재당첨 제한 적용 기간 (당첨일로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제1항 제7호)	7년간

### ■ 공통사항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7.08.(금)입니다. (청약 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으로 동·호수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주택 규모 표시 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 (㎡)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2 \times 0.3025$  또는  $m^2 \div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의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 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 공용면적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해당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 공용면적 부분은 동·호수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대지 지분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유될 수 있으며, 세대별 대지 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09. 04. 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여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 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 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 분양주택 상호 간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0조, 제21조에 의함)
- 공급 대상의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추후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부대 복리시설에는 관리사무소, 키즈 스테이션, 헬로우 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어린이놀이터, 주민 운동시설, 경비실 등이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의 주차 확보 대수는 864대이며 세대 당 1.32대/호의 비율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천안시는 「주택법」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과거 당첨으로 재당첨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자격이 제외되며, 1주택 이상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 청약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에 한해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 처리함)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7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 자매 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천안시에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 11. 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 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2018. 12. 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합니다.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 12. 11. 시행)
  -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 12. 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 12. 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 12. 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 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 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 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의 기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기관추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해당 기관추천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 (천안시 12개월 이상 거주자)에 거주하는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추천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 (부부 포함)이 중복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과열지역은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 청약 신청

- 신청 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 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 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 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당첨자로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 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 청약통장 가입 은행 및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증서, ③ 네이버 인증서 또는 ④ KB 모바일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YESKEY)	네이버 인증서	KB 모바일 인증서
APT (특별공급)	○	○	○	○

-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 가상 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018. 05. 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 취약 계층 (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해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전 예약한 경우에 한해 사업 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만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 (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 (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 당첨 인정, 후 당첨 부적격 (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 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 02. 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 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당첨자발표	서류 제출	계약체결
일정	07. 18. (월)	07. 28. (목)	08. 01 (월) ~ 08. 08. (월)	08. 09. (화) ~ 08. 15. (월)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 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방문 접수 (10:00 ~ 16:00)	방문 접수 (10:00 ~ 16: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 앱 : 청약Home</li> <li>청약통장 가입 은행 구분 없음</li> <li>사업 주체 건본주택 (정보 취약 계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 앱 : 청약Hom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본주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본주택</li> </ul>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로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특별공급 청약 자격요건 및 입주자 (예비입주자 포함) 선정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미적용)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불필요)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구 분	천안시,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기준 예치금액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 (대전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 계약체결 및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구 비 서 류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정보제공 동의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인터넷 청약Home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 가능. 단,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 대리 계약은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청약통장순위 (가입) 확인서	본인	-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청약통장 가입 은행으로부터 순위 (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발급
	○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 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
	○		출입국사실증명원 ※ 기록 대조일을 발급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의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청약 불가
		○		세대원 전체	- 주택공급 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 하고 있는 경우
		○		직계 존속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 비속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 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장소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주택의 공급계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당첨자 발표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당첨자 서류 제출기한 내에 건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시

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세대주, 해당 지역 거주요건,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 세대 확인 등) 단, 특별공급 인터넷 신청으로 당첨되신 분의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신청 자격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 (예비입주대상자 포함)는 계약체결이 이전에 사업 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건본주택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 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를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합니다.
- 신청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정해진 기간 내 (7일 내)에 소명하여야 하며, 미소명 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해 제출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니 세대주 기간 선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 구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기재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 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시 기재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선정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 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2018. 05. 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 (당첨일)이 입주자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용은 무효 처리됩니다.

#### ■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값 (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 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 (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 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방문 접수는 은행 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조정대상지역인 천안시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 (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 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 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 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533 - 0528**

<https://brand.halla.co.kr/>  
cheonan

[84m<sup>2</sup>A, 84m<sup>2</sup>B, 84m<sup>2</sup>C]

총 654세대

시행 : (주)무궁화신탁, 위탁 : (주)티엠라이징, 시공 : (주)한라